



서울대학교 석사·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[시행 2014.7.14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65호, 2014.7.14, 일부개정]

서울대학교 석사·박사**통합**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7.14.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65호, 2014.7.14., 일부개정]
서울대학교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58조제2항에 따른 석사·박사**통합**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개정 2011.4.29.,2012.7.12.,2014.7.14.]
- 제2조(정의) 석사·박사**통합**과정(이하 "**통합**과정"이라 한다)이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.[개정 2011.4.29.]
- 제2조의2(설치 및 운영) ① **통합**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(부)에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[개정 2014.7.14.]
② **통합**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**통합**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4.29.]
- 제3조(선발대상)**통합**과정의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.
[개정 2011.4.29.,2014.7.14.]
- 제4조(선발인원)**통합**과정의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학과(부)별 입학정원 범위에서 각 대학(원)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[개정 2011. 4.29.]
- 제5조(전형방법)**통합**과정의 선발방법 및 전형방법은 각 대학(원)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 [개정 2011. 4.29.]
- 제6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**통합**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. 다만, **통합**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[개정 2011. 4.29.,2012.7.12.,2014.7.14.]
② **통합**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.[개정 2011. 4.29.,2014.7.14.]
- 제7조(이수학점)**통합**과정의 이수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.[개정 2011.4.29.,2014.7.14.]
- 제8조(박사과정 인정) ① **통합**과정의 학생으로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.[개정 2011.4.29.,2014.7.14.]
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.
- 제9조(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)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**통합**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신설 2011. 4.29.]
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(부)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,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(부)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[신설 2011. 4.29., 개정 2014.7.14.]
③ 제1항 및 제2항의 **통합**과정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(원)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[신설 2011. 4.29.]
④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 중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89조제1항 및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」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[개정 2011. 4.29.,2012.7.12.,2014.7.14.]
- 제10조(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)**통합**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(원)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[개정 2011. 4.29.,2014.7.14.]
- 제11조(박사학위논문 제출)**통합**과정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(원)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하고, 논

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[개정 2011.4.29.,2012.7.12.,2014.7.14.]

☐ 제11조의2(박사학위의 수여)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89조제2항 및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」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.

[본조신설 2011. 4.29., 개정 2014.7.14.]

☐ 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☐ 부칙 <제1163호, 2000.12.11.>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00학년도석사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☐ 부칙 <제1329호, 2002.6.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☐ 부칙 <제1363호, 2002.10.25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☐ 부칙 <제1822호, 2011.4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.

② 2011학년도 이전에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2013학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과정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③ 2011학년도 이전에 선발된 통합과정 학생과 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통합과정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☐ 부칙 <제1869호, 2012.7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☐ 부칙 <제1965호, 2014.7.14.>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